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816-0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연구

2021. 11.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816-01

ISBN 979-11-91116-83-0 13500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PR]

2021. 11. 20.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20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기간 : 2021.6.21.~2021.11.20
- 연구책임자 : 정원준 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 김형건 연구위원
: 이상현 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표	3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마련	5
1. 입법의 방향 및 분법의 필요성 검토	5
2. 분법을 통한 법 제정 사례	9
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검토	18
가. 총칙(제1장, 제1조~제4조)	18
나.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2장, 제5조~제7조)	28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제3장, 제8조~제17조)	31
라.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제4장, 제18조~제26조)	49
마. 보칙(제5장, 제27조~제30조)	66
바. 벌칙(제6장, 제31조~제32조)	72
4. 하위법령으로의 위임이 필요한 규정 검토	75
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최종안	77
제3장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 마련	87
1.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정비사항	87
2.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구성체계	88
3.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 초안	95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특허·디자인·상표 등의 산업재산은 그 자체로 핵심 무형자산인 동시에 전세계 모든 기술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기술력이 국가와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기술·산업 전략의 수립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산업재산 정보는 그간 주로 R&D 및 심사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활용되었다면, 현재는 산업전략 기술안보 외교통상 등의 분야로 활용가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 ‘디지털 지식재산혁신전략(‘21.2 지재위)’ 이행을 위한 10대 입법과제 중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개방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포함
 - * ‘혁신성장 BIG3 회의’·‘범부처 글로벌 백신허브 TF’ 등 범부처 협의체 등 정부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도 혁신전략 수립에 앞서 올바른 방향성 설정을 위한 특허정보의 분석·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산업재산 정보는 기업 등이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연구결과와 핵심결정체로 구체적인 기술내용 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기술·시장전략, 발명자 등 핵심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정보를 담고 있음
- 또한, 산업·기업별 기술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개발(R&D)을 가능케 하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의 경영자원으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계 산업·기술 변화의 흐름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
- 이에 산업재산 정보의 범국가적 활용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강구·시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
 - 현행법은 「발명진흥법」의 일부 조항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간략히 규율하고 있을 뿐,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가공 등 관리, 제공 및 활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

- 이러한 입법공백은 국가와 기업의 산업·기술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저해하여 주요국과의 첨단기술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큼
-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만의 특성(국제표준화된 해외데이터 활용빈도多, 분석 등 가공 작업에 고도의 전문성 요구, R&D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등)은 ‘공공데이터법(기본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별도 특별법에 규정할 필요
- 또한 기존 『발명진흥법』 개정방식으로 산업재산 정보활용 관련 다수의 신규 입법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초 입법의 목적 취지를 벗어날 우려
- 법 목적 측면에서 권리화의 결과물인 산업재산 정보를 R&D 산업 부문에 활용하는 것은 발명 등의 권리화 사업화를 지원하는 ‘발명진흥’과는 구별이 필요함
- * 궁극적인 입법목적은 유사할 수 있으나, 양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수단과 그 수단의 활용 측면·양상 등에서 차이 발생

입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진흥법)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제정안) 국가 기술혁신역량 및 산업경쟁력 제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달성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진흥법) 발명의 장려 및 신속한 권리화·사업화를 위한 지원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직무발명 활성화, 특허관리 지원, 발명사업화 촉진 비용지원 등 ▶ (제정안) 산업재산의 창출·활용 등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국가·민간 R&D효율화, 기술·산업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을 위해 활용하는 것에 중점

2. 연구의 목표

- **상기와 같은 입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마련을 위한 입법연구를 목표로 함**
 - 기존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의 산업재산 정보 관련 일부 조항을 이관하는 한편,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조항들을 신설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보급 및 활용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현행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 정보 관련 규정과 타 법률상의 관련 조문을 이관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가 전략 수립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등의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산업재산 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
 - 이를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 및 산업·기술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 기술혁신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또한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내용과(제2장 제3절),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받아오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 활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활용위원회 설치 등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검토 및 구성하여 법안에 담고자 함

<표 1> 다른 법률상의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문

법률명	관련조문
「발명진흥법」	제2장 발명의 진흥 제3절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제20조(산업재산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제20조의3(산업재산 정보화전문기관) 제20조의4(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25조(선행기술 조사)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지식재산기본법」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 이에 산업재산 정보의 범국가적 활용을 위한 필요 가치와 그 정책수단의 법적 근거 신설 및 기존 법률 내 관련조항 이관을 통해 통합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발명진흥법」 전면개정안)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3장의 조문이 이관됨에 따른 법률의 체계성의 유지 및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전면개정안을 추진

○ 산업재산권 정책 관련 「발명진흥법」 등 소관부처 내 법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입법(제정)의 논거 및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발명진흥법」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간 관계 정립의 측면에서도 「발명진흥법」의 전부개정안 마련이 요구됨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마련

1. 입법의 방향 및 분법의 필요성 검토

□ 산업재산 정보 관련 이관조항에 대한 검토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이관조항 검토를 통해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 정책에 부합하는 조문을 선별함
 - 문서의 전자화와 관련된 조항으로 「특허법」 제28조부터 제28조의5, 제217조의2, 「상표법」 제28조부터 제32조, 제217조, 「디자인보호법」 제28조부터 제32조, 제208조
 - 특허분류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된 조항으로 특허법 제58조
- 「발명진흥법」의 이관조항 검토를 통해 기존의 「발명진흥법」에서 목적과 성격이 상이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규정을 검토 정리함
 - 산업재산 정보제공 및 활용 관련 조항으로 제20조부터 제20조의8
 - 선행기술조사 관련 조항으로 제25조
 - 산업재산권진단기관 관련 조항으로 제36조, 제37조
 - 산업재산권서비스업육성 관련 조항으로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7
 - 특허전략개발원 관련 조항으로 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
- 「발명진흥법」에서의 이관조항을 검토·확정하여 「발명진흥법」의 법체계 측면에서 촉진법 및 타 법률과의 관계 정립사항도 검토함

□ 산업재산 정보 관련 신설조항에 대한 검토

- 기존의 「발명진흥법」에서의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 관련 규정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신설조항 검토
 - 산업재산 정보 제공 및 활용의 범위 규정과 관련하여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와 관련된 규정 검토

-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 수단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국내외 경제주체의 산업재산권 활동 및 통계조사, 산업재산 정보 관련 백서발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규정 검토
- 산업재산 정보 품질제고를 위한 평가 및 환류 관련 산업재산 정보활용 실태조사, 품질관리, 표준화 등 규정 검토
- 『발명진흥법』에서는 법리적·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전부개정안 작업에 앞서 개정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의견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
 - 발명진흥기본계획, 발명진흥시행계획, 발명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관련,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규정, 산업재산권의 창출·활용 및 금융 지원 등을 검토하여 신설조항으로 검토

□ 법체계 정합성 분석 및 입법방식의 결정

- 법체계 정합성 분석
 - 현행의 법체계 내에서 규율되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효과성, 과급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
 - 단일법 내에서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신설조항에 대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
- 분법을 통한 입법의 필요성 분석
 - 일반적으로 분법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상호관련성이 없거나 미약한 내용을 각 동일 법률 내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법률의 집행권한, 책임부담을 하여야 하는 기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는 법률 등 수범자에게 불편을 주는 법률이 대상이 됨
 - 이러한 법률들은 체계정당성, 이해의 용이성, 실용성 등의 기준에 의해서 각각의 입법 목적과 실효적 집행, 수월한 준수를 위해서 분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제처('11)에서 발표한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법령 통폐합의 세부기준과 법령 분법의 세부기준을 가이드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음

〈표 2〉 법령 분법의 세부기준(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세부 기준	1. 단일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법이해가 어려운 경우
	2. 내용이나 분야가 다름에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3. 특정 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세부 분야별로 분법하는 경우
	4.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와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5.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
	6. 특정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 자료: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에 관한 연구(법제처, 2011). 연구진 재정리

- 기존 법령 내에서의 조문추가 및 장·절 체계의 개정을 고려해볼 때 단일 법령 체계 안에서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정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가 되어 전체적인 법체계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음
- 현행 발명진흥법은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근거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포섭함으로써 사실상 통합 법률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내용이나 분야가 다름에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단일한 법체계가 정합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산업재산정보의 경우,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과정에서 수집·생성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과정에서 처리되는 무형적 자산으로서, 현행 발명진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직무발명의 활성화, 발명의 권리화 지원, 발명의 사업화 촉진,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등의 내용과는 그 성격이나 대상 범주의 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법률 체계를 통해 별도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분법을 통해 산업재산정보를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과정에서 수집·생성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로 확대 정의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를 통한 관련 산업 및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본 법안에서는 제7조(실태조사),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제9조(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제16조(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제21조(국제협력),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제23조(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등 다수의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상술한 분법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하였음

- 결론적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분법의 세부기준 중 '5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와 '6 특정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체계 정당성 원칙을 중심으로 분법이 바람직함
-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분법을 통한 제정법 마련과 기존의 「발명진흥법」에 대한 전부개정안 마련이 필요함

2. 분법을 통한 법 제정 사례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제정]

① 분법 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분법을 통한 법 제정

▷ 제4장제10절(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를 검토·이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4(기본지침)	제5조(기본지침)
제62조의15(육성계획의 수립)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제62조의16(육성계획의 조정)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62조의18(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62조의19(공장설립 지원)	제27조(공장설립 지원)
제62조의20(지역협동기술향상)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제62조의21(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제62조의22(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제62조의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62조의2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62조의25(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62조의26(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② 제정이유

-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제정]

① 분법 개요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분법을 통한 법 제정

▷ 제정법의 내용에 따라 용어의 변경 및 관련 조문을 검토 · 이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수로조사기본계획)	제7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1조(수로조사의 실시 등)	제19조(기본수로측량의 실시) 제20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제32조(수로조사 실시 등의 공고)	제11조(해양조사의 공고 등)
제33조(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	제21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34조(수로조사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제35조(수로도서지의 간행 등)	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제36조(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제48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제37조(수로정보 관련 사항의 통보)	제49조(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제38조(관계기관의 수로조사성과 활용)	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기타 세부 조문별 조, 항, 호, 목	각 조문별 이관 / 그 외 조문 신설

② 제정이유

-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해양관할권 및 해양자원 개발 관련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 및 육상자원 고갈 등 인류의 공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양산업의 발전 및 해양재해의 예방 등을 위한 해양정책의 수립에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등을 통하여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및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조사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종전의 ‘수로사업’의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양조사·정보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해양정보 관련 해양조사·정보업의 발전과 해양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도록

록 하는 등 전문적인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29호, 2020. 2. 4., 제정]

① 분법 개요

- 「방위사업법」의 분법을 통한 법 제정

▷ 제33조 ~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4조 등 세부 조문을 검토·이관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제8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제36조(사업조정제도 등)	제11조(사업조정제도 등)
제38조(자금용자)	제12조(자금용자)
제39조(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보조금의 교부 등)
제42조(협회 등의 설립 등)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44조(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제15조(수출지원 등)
기타 세부 조문별 조, 항, 호, 목	각 조문별 이관 / 그 외 조문 신설

② 제정이유

- 「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결과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었음

- 그러나,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와 방위력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방위산업 발전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방위산업법」이라는 단일법으로는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제정]

① 분법 개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분법

▷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등을 검토·이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분법

▷ 제9조, 제9조의3, 제2장(제10조부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 제19조의7, 제19조의9, 제3장(제20조부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30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6조, 제47조의2 등을 검토·이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4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4조의5(한국벤처투자조합 조합원 지분의 양도)	
제4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4조의7(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4조의8(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제4조의9(전담회사의 설립 등)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제4조의10(전담회사의 업무 등)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제8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제64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13조의2(개인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및 운영 등)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등)	
제28조(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기금의 우선 지원)	
제9조의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등)	
제10조(등록)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의무의 승계)
제12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제4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제13조(등록 등의 공고)	제4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제4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3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제15조의2(대주주의 행위제한)	제4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제3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제19조(결산 보고)	제4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제19조의2(엑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제19조의3(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제19조의4(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제25조(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제19조의5(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19조의7(엑셀러레이터 육성 시책 수립·시행)	
제19조의9(준용)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21조(업무의 집행 등)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제15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제23조(결산 보고)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24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24조의2(조합원의 지분양도)	
제25조(해산)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제26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27조(조합 재산의 보호)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제28조(수익처분)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29조(조합의 공시)	
제30조(「민법」의 준용)	제23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4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42조의2(경영 건전성 기준 등)	제29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4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7조의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② 제정이유

- 지금까지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
-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벤처투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 및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제정]

① 분법 개요

- 「식품산업진흥법」의 분법을 통한 법 제정

▷ 「식품산업진흥법」에서 농업과 어업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의 세부내용으로부터 어업, 수산물, 해양수산부장관 관련 규정 등을 분리하여 이관 및 규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20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8조(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3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7조(수수료 등)	제40조(수수료 등)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9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0조(승계)	제37조(승계)
제31조(조세의 감면)	제41조(조세의 감면)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38조(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의2(청문 등)	제42조(청문 등)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제45조(벌칙)
제37조(양벌규정)	제46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제47조(과태료)
기타 세부 조문별 조, 항, 호, 목	각 조문별 이관 / 그 외 조문 신설

② 제정이유

-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어 연구개발 투자 등의 부족으로 수산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식품산업진흥법」 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수

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문체계도

제 정 (안)	발명진흥법 이관 여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신 설〉
제2조(정의)	〈신 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신 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 설〉
제2장 정책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신 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신 설〉
제7조(실태조사)	〈신 설〉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신 설〉
제9조(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신 설〉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신 설〉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신 설〉
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특허법 제217조의2 이관
제13조(통계·지표의 조사·분석)	발명진흥법 제20조의8 이관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발명진흥법 제20조의2 이관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신 설〉
제16조(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신 설〉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발명진흥법 제36조 이관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제18조(연구개발의 지원)	발명진흥법 제20조의4 이관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신 설〉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신 설〉
제21조(국제협력)	〈신 설〉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신 설〉
제23조(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신 설〉
제24조(민간 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발명진흥법 제20조의5 이관
제25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신 설〉
제26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서 제55조의7 이관
제5장 보 칙	
제27조(업무의 위탁)	발명진흥법 제56조 이관
제28조(비밀유지 의무)	발명진흥법 제19조 이관
제29조(청문)	발명진흥법 제57조 이관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발명진흥법 제59조 이관
제6장 벌 칙	
제31조(벌칙)	발명진흥법 제58조 이관
제32조(과태료)	발명진흥법 제60조 이관
부 칙	

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제1장, 제1조~제4조)

목적 (안 제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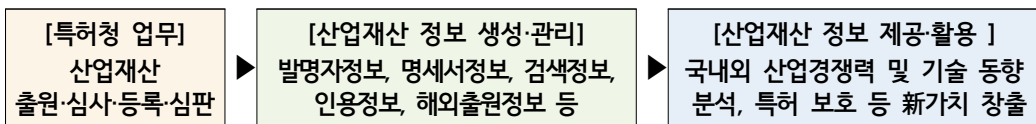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확산을 통하여 국가 기술혁신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취 지

- 이 법의 입법 목적으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명시함
-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를 지원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역량을 제고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 설

- 특허·디자인 등을 출원, 심사, 등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발명자 정보(기술인력), 명세서 정보(기술), 인용정보(가치평가) 등 모든 정보로 그 자체로 핵심 무형자산인 동시에 전세계 산업·경제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치있는 내용을 포함
- 특허는 경제주체들이 자금을 투자하여 만든 것으로 전세계 모든 기술정보의 80%이상을 포함



- 주요국의 특허법 등에서 산업재산 정보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로 규정 (일본)하거나 행정조치(중국) 등으로 운용함에 따라 우리의 경우에도 관련 입법이 필요
-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법’ 등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활용 업무 사항 및 이를 전담할 전문기관에 대한 근거를 명시
- (중국) ‘지식재산 정보 공공서비스 지침 발행에 대한 통지(通知)’에서 모든 국가기관의 IP정보

활용교육, 컨설팅, R&D 단계별 활용 및 산업별 DB 구축 등 IP정보서비스 제공원칙 하달

□ 참조 조문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산”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발명·고안·상표·디자인, 그 밖에 산업상 이용 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과정에서 수집·생성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산업재산 정보화”란 산업재산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기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란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5.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이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가공·저장·관리·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산업재산진단”이란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가공·분석·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업을 말한다.

□ 취 지

- 이 법안에서 핵심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산업재산’과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산업재산 정보화, 산업재산진단,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
-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기존 발명진흥법상의 정의규정을 보다 확장하는 개념으로 ‘산업재산 정보’를 재정의함
- 산업재산진단의 경우 기존의 발명진흥법의 규정을 그대로 이관 조치함
-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은 이 법안에서 다루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요한 핵심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의 조항에 포함시켜 규정

□ 해 설

- (산업재산)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 개념을 “산업재산”으로 대체·변경하여 정의함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 추가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시켜 법률상 대상 범위를 다소 확장하였으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과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부기하여 명확성을 확보
 - 기존의 “산업재산권”을 정의하는 방식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므로 정보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권리화와 관련된 정보만을 포함하여 개념 범주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 반면, 동 조에서 산업재산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보다 넓은 개념인 “산업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의 대상으로 포섭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산업재산 정보) 산업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생성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로 정의
 - 여기서 산업재산 정보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지식이나 자료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정보” 개념과 동일하게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한 지식이나 자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넓게 정의함
-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정보 시스템) 정보데이터 베이스의 경우 산업재산 정보의 검색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지칭하는 것이고,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 생성, 유통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기와 SW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처리 체계 전반을 일컫는 개념으로서 구분 가능

산업재산,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정의조항 검토

1. 입법 취지·목적 상의 검토

- 법제도와 제도개선을 논할 때는 권리 중심으로 가야 하지만 동법은 권리보호를 피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보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므로 권리나 제도 중심적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
-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규제적 성격의 법률이 아닌 정보의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정보의 범위를 권리로만 한정시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되도록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시켜 융복합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사조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재산’ 정의와 관련하여, 이보다 협의의 개념인 ‘산업재산권’으로 정의를 변경할 경우,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로 한정되어 폭넓은 정보의 융합, 분석, 가공 등 활용을 통하여 국가기술혁신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제약을 받게 됨
 - 본 법안은 구체적인 기술내용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기술, 시장전략, 발명자 등 핵심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정보를 활용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산업재산권으로 한정하는 경우 법의 존재 의의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
-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 및 확산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가급적 그 범위가 넓어야 하고 등록된 특허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특허 등으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와 최종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등록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심판 과정에서 생성 및 수집되는 정보도 포함되어야 함

2. 정보의 활용촉진 관련 정보의 범위 검토

- 동법에서 취급하는 핵심 정보는 권리자체 관한 정보(권리의 귀속, 변동정보, 소송, 라이선스 관련 정보)라기 보다는 권리와 과정과 심사과정에서의 도출되는 다양한 정보(발명자, 출원인, 공동연구, 거절이유, 발명의 분류와 내용과 기술적 해결 수단)등이 활용정보의 핵심이므로 굳이 잘 사용되지 않는(전 법령에서 2곳에서만 산업재산권이란 용어 사용) 산업재산권이란 용어를 대신 보호보다는 활용측면에서 볼 때 친근감 있는 용어인 ‘산업재산’이란 용어가 더 바람직함
- 산업재산 정보 즉, 관리되어야 하는 정보는 산업재산권이 아닌 것이 많고(예: 아이디어, 부정경쟁 등), 산업재산권이 아닌 산업재산의 정보(등록되지 않은 권리 등)도 많기 때문에, 활용정보의 폭을 넓히려면 “산업재산 정보”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종전 발명진흥법에도 특허권정보가 아니라 ‘특허정보’ 용어사용
 - 산업재산 데이터셋은 특허와 상표 데이터, 공공 및 사적 회사, 시기별 업데이트 내용, 지식재산 소유의 변화, 독점적 지식재산 매트릭스 등으로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음
- 국가차원의 정보관리와 촉진행정이란 차원에서 볼 때 지식재산정보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처 간 업무영역 상 “산업재산 정보”를 사용하되 특허청 및 관련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전체업무(영업비밀, 부정경쟁, 미등록디자인, 트레이드드레스 등 광의 영업표지, 반도체칩 등)와 관련

한 정보로 폭 넓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산업재산권으로 한정하면 4법 영역에 간히게 됨)

- 산업재산 정보와의 연결적인 측면에서 산업재산권보다는 산업재산이 타당함
 - 현대의 지식재산에 대한 새로운 형태도 포함되어야 함
 - 불공정 경쟁, 영업비밀, 퍼블리시티 등 특허청이 다루는 지식재산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함
-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권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권리가 아닌 산업재산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기에 산업재산 정보를 정의하기 보다는 산업재산과 산업재산 정보가 타당하며, 그 정의는 특허청이 다루는 업무 즉, 새로운 지식재산 유형과 심판 등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임

3.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업 및 민간부문 관련 검토

- 현재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산업재산의 등록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며, 등록되어 권리화된 산업재산에 관한 정보만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
- 동법은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의 육성을 담고 있으며, 이는 주로 민간 영역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민간의 서비스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가공·분석·번역·유통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정보의 대상을 권리정보로만 한정할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동법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에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생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권리화 된 정보로만 한정시킬 이유가 없음
 -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정보 간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정보와 필연적 결합이 요구되는바 정보의 활용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동법의 대상을 가능한 한 넓게 포섭하는 태도가 중요함

4.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검토

-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권리화에 이르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 영업비밀은 특허와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특허의 전 단계, 또는 의도적으로 특허화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함
 - 아이디어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스펙트럼이 넓음
 - 이 정보들은 모두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 정보이나 권리화에 이르지 않은 것들임
 -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는 현재 원본증명제도나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을 통해서 보호받으며 그 정보 또는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보관됨
-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새로운 보

호 대상인 ‘데이터’의 경우도 디지털 정보로서 컴퓨터 설비 내에 보관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
- 데이터는 발명·고안 등 정보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함

5. 국제조약, 국제기구 용례

-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가 발행하는 제도소개 책자제목이나 정보조사 핸드북에서도 마찬가지로 <Industrial Property>, 이란 용어 사용
 - “Understanding Industrial Property”,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First published 2005, Second edition 2016
 - WIPO, HANDBOOK ON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WIPO ST.25: Handbook on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by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Publication date 2001
- (파리협약)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현상인 파리협약의 공식명칭도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 1883 권리를 의미하는 right가 빠져 있음.
 - Art. 1, (2)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has as its object patents, 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trademarks, service marks, trade names, indications of source or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 repression of unfair competition. (산업재산의 보호는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의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 그리고 부정경쟁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부정경쟁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대상을 넓게 인정할 필요 있음

6. 주요국가 용례

- (일본) 産業財産權 대신 공업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공업소유情報’라는 표현이 어색하여 공업소유권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영문판 소개자료에는 Industrial Property Right InformationdI 아니라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으로 소개하고 있음
-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제2조 정의 규정 중 제1호에서 제2호의 “지적재산권”에 앞서 “지적재산”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은 제20조에서 “국가는 지적재산에 관한 국내외 동향의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작성함과 동시에 지적재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자, 대학 등 그 밖의 관계자에게 인터넷, 그 밖의 고도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음
 - 즉, 일본 지적재산기본법도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인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독일) Patentinformationszentren (특허정보센터) Patent Information Centres (20개 이상 존재)
 - Die Patentinformationszentren stellen Ihnen auf diesen Seiten alles Wissenswerte über Patente / Gebrauchsmuster, Marken und Designs (Geschmacksmuster) vor.

- (미국) 저작권정책까지 특허청에서 관장하므로 지식재산이란 용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Patent Information, trademark Information 등 개별영역별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되고 있음
- (기타) 해외에서 산업재산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으나, 이는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중국적으로는 지식재산과 지식재산 정보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
 - “industrial property” means patents, utility model certificate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 marks including certification trade marks and collective trade marks.
 - “Industrial Property Rights” means rights related to patents, 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certification mark, collective mark, mark, lay out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ed under this Act.
 - “industrial property rights” mean rights under patents, certificates of utility models and technovation and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issued under this Act.

□ 참조 조문례

발명진흥법
<p>제2조(정의) 7.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p> <p>8. "산업재산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p> <p>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p> <p>가.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이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p>

지능정보화기본법
<p>제2조(정의)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p> <p>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p>

국가 등의 책무 (안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취 지

- 동 조는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 해 설

- 정보 활용 및 촉진에 관한 시책 마련에 있어서는 국가를 책무의 주체로 하고, 정부 시책에 따른 각 기관별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주체로 하여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취 지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은 이 법이 특별법적 위치에서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함

□ 해 설

- 산업재산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를 조문상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이 법안은 의료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이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달리 개인정보성이 없는 산업상 이용되는 정보를 주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즉,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할 때에는 법안의 개별 조문별로 연관될 수 있는 관계 법률을 모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전체의 취지상 중첩적인 규율을 피하기 어려워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 이 법안 제13조의 공개된 정보에는 발명자의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발명의 공개를 통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특허법 본연의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 공개 행위에 대한 합목적성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특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 범주에 대해서는 입법적 판단이 아닌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는 상황

□ 참조 조문례

공공데이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2장, 제5조~제7조)

기본계획 (안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중장기 발전방향
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및 사업의 추진
5.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6.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 지

- 동 조는 이 법안에서 정하는 핵심 사항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수립 주기, 수립 절차 및 협조요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

□ 해 설

- 특이사항 없음

시행계획 (안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 지

- 동 조는 3년 주기로 수립되는 제5조의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

□ 해 설

- 특이사항 없음

실태조사 (안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및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 지

-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 시장의 분석을 위하여 특허청에 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
- 실태조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 설

-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거나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입법례도 존재하나, 이 법에서는 단순히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상의 자율성 부여
- 실태조사의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 함

□ 참조 조문례

게임산업진흥법

제11조(실태조사) ①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제3장, 제8조~제17조)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안 제8조)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취 지

-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현재 수행중이거나 신규 발굴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해 설

-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산업재산 정보화 촉진을 위한 각 종 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산업재산 정보화와 관련한 개별 데이터 관리 또는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만으로는 개별 시스템 운영만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유기적·체계적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
 - 따라서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또한 정부를 추진주체로 하고, 산업재산 정보화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참조 조문례

산림기본법

제25조(산림정보화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임업

경영을 위하여 산림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임업 등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산림·임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안 제9조)

제9조(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특허청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취 지

- 특허청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함

□ 해 설

-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특허청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함
 -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디바이스,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등 정보체계를 이루는 정보 시스템 개념과 달리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접근·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체를 의미함
- 산업재산 정보의 최신성 유지, 효용성 증대 등을 위하여 수집, 생성된 산업재산 정보와 더불어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책무를 부과
- 특허청장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과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정보관리의 실효성을 담보

□ 참조 조문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안 제10조)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검색·가공 및 분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재산 정보 이용자에게 산업재산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취 지

-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고도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
- 정보 시스템의 구축은 산업재산 정보를 실질적·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이므로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정보화에 필수적 규정에 해당

□ 해 설

- 산업재산 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정보이용자에 대한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발명진흥법」 제20조의 정보화추진계획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안정적·체계적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
- 특허청장은 정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제 표준의 변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 담보

□ 참조 조문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된 해양정보 등을 수집·가공·분석·예측하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해양조사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안 제11조)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 지

- 기술·산업 혁신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가치 제고, 활용 확산 지원을 위해 분류체계 작성 및 산업분류 등과의 연계가 필요
- 특허 분류는 세부기술 단위로 부여되어 있어 특정 산업분야의 국내외 특허 동향·현황 분석 등을 위해서는 각 산업분류별로 특허분류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

□ 해 설

-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 상표, 물품 등의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함
- 산업재산 정보를 표준산업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 간 연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연계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안 제12조)

- 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이하 “산업재산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국제출원 중인 산업재산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전자화기관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취 지

- 업무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산업재산 출원, 심사 등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를 전자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본 법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관계 법령과의 체계 및 유사·중복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이관하여 규정

□ 해 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절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

관 등의 절차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전자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의 효율적·전문적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자화 업무의 위탁기관에 대하여 통제·관리를 위해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탁업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특허법」 제28조의3의 제1항,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 등의 조문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근거 유지
- 또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파일에 대하여 수기기록과의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규정의 실효성 확보

통계·지표의 조사·분석 (안 제13조)

- 제13조(통계·지표의 조사·분석)** ① 특허청장은 기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 지

- 산업재산 정보 관련 통계·지표의 조사·분석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발명진흥법」 제20조의8을 이관하여 재규정

□ 해 설

-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정책집행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관련 통계와 지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확한 통계 및 지표조사를 위하여 정부의 시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통계 조사 및 분석의 효율적 실시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 및 법인과 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료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산업재산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외국환거래정보에 대하여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안 제14조)

-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특허청장은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 지

-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 수집·가공시 발생가능한 법률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개정보 수집·가공에 대한 권한 및 법적 근거 필요
- 산업 지원 목적으로 발명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발명자 정보 수집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존재

□ 해 설

- 특허청장은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기술 및 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가공·이용·제공할 수 있음
-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가공·제공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
-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제공요청자가 이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검토

- 본 법률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해석에 따라 이 법에서 다루는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 적용됨
-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조문에서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됨. 하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처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예외가 인정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럼 “개인정보를 제외하는 경우”로 구분됨
- 본 법률안의 이관 조항인 제20조의2 조항과 동법 시행령상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의무 요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와 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7호]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 근거하여 이미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에 속하므로 본 법안에서 별도 언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임

- 아울러 본 법안은 기술정보 공개를 위한 법률상 의무로서 발명자 정보 및 주소 등의 일부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다른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킬 여지가 있음(다만 요 내용은 오히려, 법제4조 등을 통해 개보법과의 관계를 더 명료하게 하라는 반대 논리에 부딪칠 우려가 있음)
- 또한, 공공데이터법, 신용정보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데이터행정기반법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포함될 여지가 있는 각종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도 개별 조항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규정은 없음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안 제15조)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특허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산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 지

-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을 위해 특허출원 등의 정보를 산업부·방사청 등 관계부처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

□ 해 설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이 산업재산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안 제16조)

제16조(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2.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분석
3.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분석
4.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이전·거래 및 사업화 등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가.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 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
 - 라.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
6. 그 밖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②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취 지

-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재산 정보 활용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을 위한 담당공무원 및 전문인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산업재산 정보를 관리·활용하기 위한 지원을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전략원 등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해 설

- 동법 및 동조문은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시 산업재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동법 및 동조문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알맞게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직접 명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년 1월 1일 시행) 체제에 맞춰 수정(안 제16조제1항제1호)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으로 인용)에서는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 조사(2008.12.31.), 표준특허 동향 조사(2014.08.12.)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었음
- 그러나 혁신법에서는 위와 관련된 사항을 대폭 축소·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동법 제4조 해석상 산업재산 정보가 반영될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오로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수요조사에서의 “동향 및 파급효과”(제7조제1항제2호), 사전기획에서의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제8조제1항제2호)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이므로 그에 알맞게 축조

□ 추가적인 쟁점

- 연구개발 수행부처·전문가와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이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 및 필요정보 등을 결정하는 협의 절차 및 기구 필요

□ 참조 조문례

지식재산 기본법
<p>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①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p>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 및 내용 2. 동향 및 파급효과 3. 수행기간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이하 생략)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 기대효과 (이하 생략)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중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제품·장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그 제품·장치를 개선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총 15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2.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안 제17조)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진단기관이 아닌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 지

○ 산업재산 진단업무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한 진단기관 지정 필요

- 현행 「발명진흥법」 제36조를 이관하여 재규정

□ 해 설

○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 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디자인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시설을 요건으로 하여 산업재산진단 업무의 전문성 담보

- 산업재산진단시설은 관련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안정적 업무 실시가 가능하도록 함

○ 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하여 산업재산 진단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특허청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통제·관리를 위하여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

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산업재산진단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③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지정권한의 법적 효력유지 및 지정 진단기관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받지 못한 기관이 명칭을 오용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

라.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제4장, 제18조~제26조)

연구개발의 지원 (안 제18조)

제18조(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재료·물품 등을 포함한다)가 민간 부문에 원활히 이전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취 지

- 현행 발명진흥법 제2장(발명의 진흥)에 포함된 조항 중에서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안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제안된 조항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함

□ 해 설

-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용되는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추가적인 쟁점

- 산업재산 정보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예. 국가재정 지원의 근거, 비용지급대상 및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규율 필요

□ 참조 조문례

발명진흥법

제20조의4(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2.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보완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4.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5.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안 제19조)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계획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취 지

-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함

□ 해 설

-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추가적인 쟁점

-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주체(양성기관)가 불명확함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수당(강사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대상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 참조 조문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p>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3. 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4.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p>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안 제20조)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과학·산업기술·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등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교육
2.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취 지

-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 활용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해 설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 활용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참조 조문례

발명진흥법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식재산기본법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안 제21조)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의 정부·기업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산업재산 정보의 상호 교환
2.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공동조사·연구 지원
3.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인력의 교류 지원
4.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5.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취 지

-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단체 등과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근거를 규정함

□ 해 설

- 정부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 교환, 국제조사·연구, 기술과 인력의 교류, 국제표준화 활동 및 국제공동사업 등의 지원, 기술·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등에 관한 국제협력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

□ 추가적인 쟁점

-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산업재산 정보 교환(동조 제1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산업재산 정보 교환의 기준,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 필요

□ 참조 조문례

발명진흥법

제20조(산업재산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생산 및 관리
2.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 2의2. 산업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3.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 육성
- 4. 산업재산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 ③ 특허청장은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재산기본법
<p>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①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적 합의사항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조약·협약 등 국제적 합의가 국내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정책이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과학기술기본법
<p>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4. 연구개발 시설·장비,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7.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p>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p>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 ③ 삭제

보안 및 품질관리 (안 제22조)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 지

- 산업재산 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안조치 의무화 필요
-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사항을 규정

□ 해 설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에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위조·변조·훼손·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보안조치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함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 진단과 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참조 조문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안 제23조)

제23조(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과 관련된 창업 지원
2.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홍보를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3. 우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및 창업사례에 대한 포상
4.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취 지

-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민간 부문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다만 정보서비스업과 관련된 실제 시장 규모가 산업으로 정의할 정도로 크지 아니하므로 업종의 일환으로 보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으로 칭하도록 함

□ 해 설

-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지원, 포럼 등 행사개최, 우수 사업자 포상, 품질인증제도 운영, 정부 구매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

□ 참조 조문례

발명진흥법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간 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안 제24조)

제24조(민간 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민간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취 지

-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결과로 민간 시장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해 설

-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 추진시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민간 서비스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참조 조문례

발명진흥법

- 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안 제25조)

제25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①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지원
2.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지원
7.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취 지

-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법정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규정 신설
- 전문기관의 명칭, 성격, 업무, 재원 조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 마련

□ 해 설

- 한국특허정보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

- 기존에 설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전문 기관의 존속

및 업무 지속성 등이 보장되지 않아 안정적 업무수행이 어려웠던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립 근거 규정 마련

○ 한국특허정보원의 업무 내용 등 특정 마련

-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업무 내용, 자원 조달 방법, 업무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추가적인 쟁점

○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 법률과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반영 검토 필요

- 현행 발명진흥법 제20조 제2항에서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 내용 규정. 위 제정안 제20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제2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지원’ 업무를 포함시킨 것과 총체적인 검토 필요

- 기존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의2(특허분류)에서 특허청장의 특허분류 관련 업무를 신설. 위 제정안 제20조의3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특허분류 및 제공’ 업무를 포함시킨 것과 총체적인 검토 필요

○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필요

- 현행 발명진흥법 제56조에서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에서도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대행의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참조 조문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p>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교육·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

<p>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5.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p> <p>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p> <p>7.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p> <p>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p> <p>⑧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과학기술기본법
<p>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2.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p> <p>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p> <p>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p>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p>

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안 제26조)

제26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조사·분석 및 관리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연구·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전략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취 지

- 현행 발명진흥법 제6장의3(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포함된 조항 중에서 이관하는 것으로 제안된 조항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지원 사업을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법적 설립 근거를 규정

□ 해 설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법적 설립 근거, 사업의 범위, 업무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

□ 참조 조문례

발명진흥법

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6(전략원의 사업) ①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특허 조사·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관리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기관 고유사업

② 전략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7(전략원에 대한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마. 보칙(제5장, 제27조~제30조)

업무의 위탁 (안 제27조)

제27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취지

- 현행 발명진흥법 보칙 장에 포함된 조항 중에서 이관하는 것으로 제안된 조항으로 특허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임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기존에 각 조문마다 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본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위탁의 범위를 정하고 본문에서는 위탁의 대상을 정하도록 함

□ 해 설

-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위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위탁의 대상으로는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정함

□ 참조 조문례

발명진흥법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각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3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의 내용에 관하여 활용지원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비밀유지 의무 (안 제28조)

제28조(비밀유지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서전자화기관
2. 제1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정보원
4. 전략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27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제1항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취지

- 현행 발명진흥법의 제2장(발명의 진흥) 및 제5장(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에 포함된 조항 중에서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안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제안된 조항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자의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규정
 -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됨
 - 문서전자화기관(안 제12조), 중앙행정기관(안 제15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안 제25조 및 안 제26조)의 임직원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됨
- 산업재산 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자가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 해 설

- 동 법안은 비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음
- 제1항은 ‘출원 중의 산업재산’에 관한 사항은 특수한 비밀의 대상으로서 누설 및 도용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누설 및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
- 이러한 규정 형식의 입법례로는 특수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 관계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음

□ 참조 조문례

발명진흥법
<p>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p>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은 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청문 (안 제29조)

제29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6항에 따른 문서전자화기관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취 지

- 현행 발명진흥법의 보칙 장에 포함된 조항 중에서 이관하는 것으로 제안된 조항

해 설

- 입법기술상 위탁 및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 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그의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함

참조 조문례

발명진흥법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4항,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 제30조)

제3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취 지

- 현행 발명진흥법의 별칙 장에 포함된 조항 중에서 이관하는 것으로 제안된 조항으로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문서전자화기관, 정보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을 별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 위탁기관이 행정업무를 행사하게 되는 경우, 정부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업무의 대집행자로 보아 별칙적용에 있어 위탁기관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해 설

-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직무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직원이나 개인에 대해 별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둘 필요

□ 참조 조문례

발명진흥법

제59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은 「형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특허법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바. 벌칙(제6장, 제31조~제32조)

벌칙 (안 제31조)

제31조(벌칙) ①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취 지

- 현행 발명진흥법의 벌칙 장에 포함된 조항 중에서 이관하는 것으로 제안된 조항으로 안 제28조에 의한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함

□ 해 설

- ‘출원 중인 산업재산’ 등 특수한 비밀의 유지를 위반한 자와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 등’의 유지를 위반한 자의 형량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참조 조문례

발명진흥법
제58조(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안 제32조)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취 지

- 현행 발명진흥법의 벌칙 장에 포함된 조항 중에서 이관하는 것으로 제안된 조항으로 이 법상 설립된 기관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벌 부과 법적 근거 마련

□ 해 설

- 특별권력관계에 기하여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재산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질서벌로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참조 조문례

발명진흥법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삭제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4. 하위법령으로의 위임이 필요한 규정 검토

□ 법령의 체계정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

조문	세부내용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
제11조 (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업무를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
제12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②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나 그 밖에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 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통계·지표의 조사·분석)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

	<p>다.</p> <p>⑤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p>	<p>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p>	<p>① 특허청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p>	<p>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p>	<p>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26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p>	<p>⑤ 전략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27조(업무의 위탁)</p>	<p>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2조(과태료)</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최종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확산을 통하여 국가 기술혁신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산”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발명·고안·상표·디자인, 그 밖에 산업상 이용 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과정에서 수집·생성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산업재산 정보화”란 산업재산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기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란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5.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이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가공·저장·관리·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산업재산진단”이란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가공·분석·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중장기 발전방향
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및 사업의 추진
5.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6.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및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특허청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검색·가공 및 분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재산 정보 이용자에게 산업재산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이하 “산업재산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국제출원 중인 산업재산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전자화기관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통계·지표의 조사·분석) ① 특허청장은 기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

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특허청장은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특허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산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2.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분석
3.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분석
4.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이전·거래 및 사업화 등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가.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

라.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

6. 그 밖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②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진단기관이 아닌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제18조(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재료·물품 등을 포함한다)가 민간 부문에 원활히 이전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계획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과학·산업기술·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등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교육
2.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의 정부·기업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산업재산 정보의 상호 교환
2.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공동조사·연구 지원
3.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인력의 교류 지원
4.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5.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과 관련된 창업 지원
2.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홍보를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3. 우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및 창업사례에 대한 포상
4.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민간 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민간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①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지원
 2.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지원
 7.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6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조사·분석 및 관리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연구·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전략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유지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서전자화기관

2. 제1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정보원

4. 전략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27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제1항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6항에 따른 문서전자화기관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제3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별 칙

제31조(별칙) ①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장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 마련

1.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정비사항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개편

-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관련 정의규정(현행 제2조제6호 내지 제8호) 삭제
-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조문(현행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4 등)들의 이관에 따른 삭제
- 산업재산권 정보 관리 및 활용 전문기관들(정보화전문기관, 산업재산권진단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법적 근거 이관에 따른 관련 조문(현행 제20조의3, 제36조, 제55조의5 내지 제55조의7 등) 삭제

□ 「발명진흥법」 구성체계의 개편

- ‘발명 중심’의 기존 규율체계(발명의 진흥, 직무발명의 활성화, 발명의 권리화 지원, 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를 ‘발명의 진흥과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이라는 일련의 흐름을 규율하는 형태로 「발명진흥법」의 구성체계를 개편

□ 조문의 신설

-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이라는 규율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필요한 조문(산업재산권의 창출, 산업재산권의 보호 지원, 산업재산권의 활용 지원 등)의 신설
-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등 현재 수행 중이 사업이나 실무를 반영하기 위한 근거 조문의 신설
- 국제협력 및 남북 간 협력 등에 관한 근거 조문의 신설 등

□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및 삭제조문, 가지조문 등의 정비

-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의 재검토 등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 조문의 병합·분리에 따른 조문 정비

○ 현행법상의 삭제조문 및 가지조문 등에 대한 정비

2.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구성체계

- 현행 「발명진흥법」을 총 8개의 장(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지원,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기반 조성,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등), 8개의 절, 96개의 조문으로 개편(하단의 표 참조)

발명진흥법 전면개정안 구성체계 신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u>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u>	<신설>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u>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u>	<신설>
제5조(발명의 날)		
제2장 발명의 진흥	제2장 발명의 진흥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u>제1절 발명진흥기본계획 등</u>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u>제5조(발명진흥기본계획)</u>	<신설>
제7조 삭제 <2017. 3. 14.>	<u>제6조(발명진흥시행계획)</u>	제3조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u>제7조(발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u>	<신설>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u>제2절 발명 활동의 촉진 등</u>	
제9조 삭제 <2017. 3. 14.>	<u>제8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u>	제6조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u>제9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u>	제8조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u>제10조(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u>	제8조의2
제10조(직무발명)	<u>제11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u>	제4조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u>제12조(발명의 날)</u>	제5조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u>제3절 직무발명의 활성화</u>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직무발명)	제10조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4조(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제10조의2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제15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2조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6조(승계 여부의 통지)	제13조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7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4조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제18조(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6조의2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9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5조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0조(출원 포기 등에 대한 보상)	제16조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21조(직무발명제도 지원시책)	제11조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2조(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제23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타법 이관>	제24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타법 이관>	제25조(「특허법」의 준용)	<신설>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타법 이관>	제26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타법 이관>	제4절 발명의 사업화 지원 등	
제20조의5(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타법 이관>	제27조(특허기술사업화중개센터의 설치 등)	제34조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8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제32조
제20조의7-삭제 <타법 이관>	제29조(우수 발명품의 판로 지원)	제39조
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타법 이관>	제30조(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제39조의2
제21조-삭제 <2015. 5. 18.> <타법 이관>	제31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제38조
제22조-삭제 <2015. 5. 18.> <타법 이관>	제5절 한국발명진흥회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제3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제52조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33조(사업)	제53조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34조(기금의 조성 등)	제55조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3장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지원	
제25조(선행기술 조사)	제1절 산업재산권의 창출 지원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제35조(산업재산권의 창출)	<신설>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36조(선행기술 조사)	제25조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제37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지원시책)	제26조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38조(산업재산권 관리 비용의 지원)	제27조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절 산업재산권의 보호 지원	
제29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제39조(산업재산권의 보호 지원)	제50조의2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제4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신설>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1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설>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제42조(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실시)	제43조(산업재산권분쟁대응센터)	<신설>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44조(산업재산권 보호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신설>
제33조 삭제 <2009. 3. 18.>	제44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2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일선센터)	제46조(보호원의 업무 등)	제55조의3
제35조(사작품의 제작·지원) <삭제>	제3절 산업재산권의 활용 지원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타법 이관>	제47조(산업재산권의 활용 지원)	<신설>

제37조(산업재산권단가관의 지정취소 등) <타법 이관>	제4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8조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제49조(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신설>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제50조(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신설>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제51조(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제29조
제40조(세계 지원)	제52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제30조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제53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54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실시)	제32조의2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55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제4장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기반 조성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56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등)	제23조
제40조의6(협회의 설립·운영 등)	제57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취소 등)	제24조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58조(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24조의2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59조(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제50조의4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60조(공제사업의 위탁 등)	제50조의5
제4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1조(준비금의 적립)	<신설>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제62조(이익금의 적립 및 사용)	<신설>
제42조(조정부)	제63조(세계 지원)	제40조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64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50조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65조(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0조의6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66조(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신설>
제45조(출석)의 요구)	제67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51조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제68조(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50조의3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제69조(국제협력)	<신설>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0조(국제개발협력)	<신설>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제71조(남북 간 협력)	<신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장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제49조(경비 보조)	제72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시책 등)	제40조의2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제73조(경쟁력 강화)	제40조의3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74조(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제40조의4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제75조(실태조사)	제40조의5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76조(협회의 설립·운영 등)	제40조의6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제77조(전문회사의 지정 등)	제40조의7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제6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등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78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제7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1조의2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제80조(위원의 해촉)	제41조의3
제53조(사업)	제81조(조정)의 신청 등)	제43조
제54조(차도·감독) <삭제>	제82조(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3조의2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제83조(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신설>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84조(조정신청 제외대상)	제44조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85조(출석)의 요구)	제45조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제86조(사실조사 등)	제45조의2

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삭 제> 제6장의3-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제87조(조정의 성립 등)	제46조
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타법 이관>	제8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6조의2
제55조의6(전략원의 사업) <타법 이관>	제89조(시효의 중단 등)	제47조
제55조의7(전략원에 대한 지도·감독) <타법 이관>	제90조(경비 보조)	제49조
제7장 보칙	제9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9조의2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제7장 보칙	
제57조(청문)	제92조(위임 및 위탁)	제56조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93조(청문)	제57조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제8장 벌칙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4조(벌칙)	제58조
제60조(과태료)	제9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
	제96조(과태료)	제60조

3.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 초안

- 전부개정을 통해 「발명진흥법」을 ‘발명을 진흥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개편
- 앞서 언급한 주요 정비사항과 구성체계 개편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단의 표 참조)

발명진흥법 전면개정안 친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진흥하고 효율적인 권리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p> <p>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직무에 속하는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p> <p>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p> <p>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진흥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발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 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안 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p> <p>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p> <p>3. "산업재산권"이란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보호법」 제90조에 따른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디자인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취지인 발명의 진흥과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지원을 반영 ■ "개인발명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고, 발명인, 발명가, 발명 인력 등을 "발명가"로 용어 통일

<p>7.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라. 「상표법」 제82조에 따른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p> <p><삭 제></p> <p>4. "번리서비스"란 「번리사법」 제2조에 따른 번리사의 업무를 말한다.</p> <p>5. "통상실시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다. 가. 「특허법」 제2조제3호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p> <p>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p> <p>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 및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p> <p>6. "전용실시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다. 가. 「특허법」 제2조제3호 및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전용실시권</p> <p>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에 따른 전용실시권</p> <p>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 및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p> <p>7.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지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p> <p>8.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p>	<p>■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문들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p> <p>■ 현행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 "번리서비스",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함</p> <p>■ 현행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조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p>
<p>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지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p> <p><신 설></p>	<p>가. 「특허법」 제2조제3호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p> <p>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p> <p>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 및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p> <p>6. "전용실시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다. 가. 「특허법」 제2조제3호 및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전용실시권</p> <p>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에 따른 전용실시권</p> <p>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 및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p> <p>7.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지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p> <p>8.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p>	<p>■ 현행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조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p>

<p>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p> <p>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p> <p>8.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p> <p><신 설></p>	<p>솔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p> <p>9. "공익변리사"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p> <p><삭 제></p> <p><삭 제></p> <p>10.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지역·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p> <p>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p> <p>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p> <p>1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p> <p>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무</p> <p>나. 변리서비스</p> <p>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무</p> <p>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p>	<p>반영하여 정의규정을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문들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 ■ 국내외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를 IP 평가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로 정의(산업재산활동과) ■ 개정안 제49조 내용 변경에 따라 삭제(산업재산활동과) <p>■ 제5호에서 '변리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p>
<p>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p> <p>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무(이하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p> <p>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무</p> <p>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무</p> <p>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p>	<p>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p> <p>1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p> <p>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무</p> <p>나. 변리서비스</p> <p>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무</p> <p>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p>	<p>■ 제5호에서 '변리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p>

<p>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알선하는 업무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신 설></p>	<p>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하는 업무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1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기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을 진흥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기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의 진흥과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신 설></p> <p><신 설></p>	<p>제2장 발명의 진흥</p> <p>제1절 발명진흥기본계획 등</p> <p>제5조(발명진흥기본계획) ① 특허청은 발명을 진흥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발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 진흥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3.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4.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전략 5. 산업재산권 창출역량 강화 방안 6. 산업재산권 분쟁예방 및 보호 강화 방안 	
<p><신 설></p>		<p>■ 체계적인 발명진흥 및 산업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p>

	<p>7. 산업재산권의 활용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p> <p>8.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p> <p>9. 그 밖에 발명의 진흥과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관리화 촉진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6조(발명진흥시행계획)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7조(자료의 제출 요청) 특허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u>제2절 발명 활동의 촉진 등</u></p>	
<p>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p>제8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p>■ '발명가'로 용어 통일</p>

<p>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9조(여성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가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 발명가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 ‘발명가’로 용어 통일, “개발” → “계발” 등 일부 문구 수정</p>
<p>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p>	<p>제10조(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 일부 문구 수정</p>
<p>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① 특허청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 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한 교육 3. 서면 연구노트의 보급 및 전자 연구노트의 시스템</p>		<p>■ 연구노트 관련 사업이 모두 조항 삭제 기부로 이관(16)되어 해당 조항 삭제</p>

<p>구축 지원 4. 그 밖에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㉔ 특허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㉕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㉖ 특허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㉗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자와 그 승계인(承繼人)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가 또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자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발명가’로 용어 통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문구 수정</p>
<p>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p>	<p>제12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p>	

제3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p>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들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들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종업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들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p> <p>2. 종업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들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p> <p>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들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들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가·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p>	<p>제13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들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들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p> <p>2.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들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p> <p>②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들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들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p> <p>③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하 "공유"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내 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동조항에서 규정 ■ 각 항의 규정 내용이 대응연결되도록 제2항과 제3항의 순서를 변경 ※ 제1항의 법정 무상실시권과 사외, 제2항의 직무발명 외 발명에 대한 사전예약계약의 취급) ■ 개정안 제3항은 제1항의 사용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부여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구를 삭제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와 공유·공유의 법적 개념을 명확화 ■ 기존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제5항으로 신설 ■ 공무원등 중 국·공립학교 교직

<p>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다른 국·공립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제5항에 따른다.</p> <p>④ 제3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학교가 승계할 수 있다.</p> <p>제14조(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p> <p>제15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①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야 한다.</p> <p>②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모든 종업원등이 그 사실을 공동으로 알려야 하고, 종업원등의 사용자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종업원등은 그 사실을 모든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원은 제5항을 적용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항은 교직원에 국·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고 전담조직을 포함하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확대 약칭 사용, 항까지 명확하게 기재 <p>■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 변경</p>
<p>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p> <p>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p> <p><신 설></p>	<p>제15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①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야 한다.</p> <p>②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모든 종업원등이 그 사실을 공동으로 알려야 하고, 종업원등의 사용자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종업원등은 그 사실을 모든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경직종업원)에 통지의무를 명확하게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 주어를 명확하게 기재
<p>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p>	<p>제16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직무발</p>	<p>■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본문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p>

<p>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들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p> <p>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p>	<p>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종업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 또는 승계에 관하여 종업원들과 합의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p> <p>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p>	<p>내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여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과 '직무발명'은 구분되지 않고 명확하게 직무발명으로 기재 ■ '동조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수정 ■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사용자등의 승계 확정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정 ■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종업원등과 승계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 ■ 종업원의 귀책사유(고의적 협의 실패 등)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까지 승계 포기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여 삭제 ■ '제3자'로 용어 통일
<p>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p>	<p>제17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이 제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p>	
<p>제16조(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p>	<p>제18조(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p>	<p>「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약칭을 처음 나오는 조항인 개정안 제13조제3항으로 이관</p>

<p>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경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정하여 그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p> <p>⑥ 제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p> <p>⑦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공공연구기관이</p>	<p>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⑤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p> <p>⑥ 제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p> <p>⑦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제3항에 따른 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 방법을 명확히 규정 ■ ①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 한 날에 승계가 된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본문의 삭제하고, ②'양도 간주' 조문에 도 불구하고 특허권등의 양도는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허법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당 문구를 수정 ■ 문구 일부 조정 ■ ①특허권등의 권리와 과정에서
---	--	--

<p>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p> <p>⑧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간 내에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종업원등이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할 수 있다.</p> <p>⑧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은 종업원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발생하는 비용(출원비용 등)은 제외하고, ②공공연구기관이 사용한 비용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하는 것은 회계처리상 불가능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업원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p>
<p>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p> <p>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p>	<p>제19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p>	<p>■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 제정 필요</p>

<p>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p>	<p>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p>	<p>■ 공공기관이 포기하는 경우 종업원등이 양수받을 수 있는 규정 이 신설되어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확한 용어로 개정</p> <p>■ 이미 권리화된 '특허권등'은 해당되지 않아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p>
<p>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p>	<p><u>제20조(출원 포기 등에 대한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를 종업원등이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9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그 직무발명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u></p>	<p>■ 정부 지원시책의 범위를 '보상제도 등의 실시'에서 '직무발명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것으로 확대</p>
<p>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과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p>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관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p>	<p>제2조(직무발명제도 지원시책) ①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이 되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 보급 2.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제도의 실시·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p>③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제3호에 따른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기를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 파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p>

<p>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 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의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p>	<p>간기업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파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p> <p>■ 보상 우수기업 -> 제도운영 우수기업으로 확대하여 인증제 개편</p>
<p>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사용자들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p> <p>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증업원등 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 로 위촉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사용자들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p> <p>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증업원등 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 로 위촉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 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 는 경우</p> <p>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 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p>	<p>제24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 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 는 경우</p> <p>2. 사용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 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p>	<p>■ 개정안에 맞춰 조문 변경</p>

<p>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p> <p>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 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p> <p>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독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p> <p>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p> <p>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p> <p>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p> <p>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p> <p>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p> <p>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p>	<p>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p> <p>3. 사용자등이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 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p> <p>4.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독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p> <p>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p> <p>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p> <p>7. 사용자등이 제19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p> <p>8. 사용자등이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p> <p>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p> <p>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p>
---	--

<p>본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산권본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25조(「특허법」의 준용)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24조의 3부터 제224조의5, 제22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직무발명 소송의 비밀유지명령 관련 특허법 준용 조항 신설</p>
<p>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하여 해당 직무발명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되는 날(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까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그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으로 예외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한 이후라 하더라도 출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해당 출원을 취하고 영업비밀로 관리하기로 하는 등 특허경영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해야할 기간을 확대</p> <p>■ 다만, 직무발명이 출원된 후 공개되기 이전이라도 논문 또는 학회 등을 통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개정</p> <p>■ 조문을 단순화(각 호로 규정할 경우 국내 출원에만 한정됨)하고, 개정 취지에 맞춰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중 빠른 날로 수정 가능</p>
<p>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①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절 발명의 사업화 지원 등</u></p> <p>제27조(특허기술사업화중개센터의 설치 등) ① 특허청장은 발명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중개센터’로 변경</p> <p>■ ‘알선’이라는 용어를 ‘중개’로 변경</p>

<p>②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포진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5.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③ 정부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p> <p>④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중개 2. 산업재산권의 실시 허락의 중개(산업재산권자가 중개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를 허락하고, 중개센터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중개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의 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포진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5.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특허기술의 중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③ 정부는 중개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p> <p>④ 중개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라는 용어에 '사용'의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p>제32조(우수 발명의 우선 구매) 특허정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8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정장은 제48조 제4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사업화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 등의 평가"로 변경
<p>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는 특허정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p>	<p>제29조(우수 발명품의 판로 지원) ① 특허정장은 우수 발명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우선구매 외 他 인증 지정도 추천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우수발명품의 판로 개척 지

<p>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신 설></p>	<p>기관"이라 한다)에 구매를 추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우수 제품의 인증·지정 등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p>	<p>원</p>
<p>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p>	<p>제30조(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p>	<p>■ 만구 수정</p>
<p>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1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발명품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5절 한국발명진흥회</p>		
<p>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p>	<p>제3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p>	<p>■ '발명가'로 용어 통일, 만구 일부 수정</p>

<p>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3조(사업) ①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 교류·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p><신 설></p>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제54조(지도·감독)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p>	<p>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3조(사업) ①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에 관한 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 교류·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 7. 발명 등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 제품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9.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사업 10.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제33조(지도·감독)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조달, 아이디어 거래 등의 사업 근거 마련
<p>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 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신 설></p>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p>제34조(기금의 조성 등) ① 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 2.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조항이 필요하여 삭제 (타법에서도 두지 않음)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조성을 위하여 현행 발명진흥법 제

<p>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p> <p>3. 차입금</p> <p>4. 기금 운용 수익금</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p> <p>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p>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p> <p>2. 우수 발명 시제품의 제작 지원</p> <p>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p> <p>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p> <p>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p> <p>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p> <p>7. 학생 발명의 장려</p> <p>8.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p> <p>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p> <p>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辨理)에 관한 지원</p> <p>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p> <p><신 설></p> <p>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3.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p> <p>4.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p> <p>5. 차입금</p> <p>6. 기금 운용 수익금</p> <p>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p> <p>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p>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p> <p><삭 제></p> <p>2. 발명 등의 평가 지원</p> <p>3. 발명의 양도 및 실시 허여, 창업자금 지원 등 사업화 지원</p> <p>4.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p> <p>5.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p> <p>6. 학생 발명의 장려</p> <p>7.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p> <p>8.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p> <p>9. 공익변리사의 무료 변리서비스 지원</p> <p>10.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 시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p> <p>11.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관한 지원</p> <p>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55조(기금의 조성 등)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제원도 기금의 재원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의 제작 지원은 사업화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삭제 ■ 영세 발명가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공익변리사의 무료 변리서비스 지원으로 변경
<p>제3장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지원</p> <p>제1절 산업재산권의 창출 지원</p>		
<p><신 설></p>	<p>제35조(산업재산권의 창출 지원) 정부는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재산권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의 선행기술 조사</p>	

	<p>2. 산업재산권 관련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3. 산업재산권 관련 산업 및 시장에 대한 전망 4. 산업재산권 창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p>	<p>제36조(선행기술 조사)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p>	<p>■ “산업재산권의 출원”은 정의상 맞지 않아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으로 변경</p>
<p>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 특허청은 사용자 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p>	<p>제37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지원시책) ① 특허청은 사용자 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 “특허”로 되어 있는 기관, 부서 등의 명칭은 산업재산권으로 바꾸지 않고 현행 유지</p>
<p>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특허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가 축적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38조(산업재산권 관리 비용의 지원) 특허청은 발명의 신속한 권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 및 등록 비용 절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 만구 조정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 면제대상을 참고, 일부 반영하여 수정</p>

<p>② 특허청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p>	<p>동법 시행령 및 징수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면제, 감면 대상이 규정되므로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삭제 검토요청에 따라 제2항을 삭제, 제1항 문구 수정</p>
<p>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p> <p><신설></p>	<p>제2절 산업재산권의 보호 지원</p> <p>제39조(산업재산권의 보호 지원) 정부는 산업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컨설팅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업 2. 산업재산권의 분쟁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및 조정 지원 4.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 등록 및 분쟁 관련 상담 및 법률자문 6.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7.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인력 양성 8.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침해예방 및 보호 활동 9.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10.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② 특허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원 정책 내용의 구체화 ■ 제2항~제4항의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등은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 ■ 범위가 불명확한 “등” 삭제 ■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추가, 실태조사는 별도의 호(9호)로 분리

<p>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제4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제39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제3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산업재산권 보호사업 대행을 위한 전문기관등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분리</p>
<p><신 설></p>	<p>제41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전문기관등의 지정취소 등의 근거 마련</p>
<p>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42조(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산업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p> <p>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p> <p>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 권고안 작성 지원</p> <p>4. 특허분쟁 경연컨설팅 및 법률 자문</p> <p>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p> <p>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동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p> <p>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p> <p>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p> <p>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p> <p>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p> <p>6. 그 밖에 상담·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u>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u></p> <p>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p> <p>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 권고안 작성 지원</p> <p>4. <u>산업재산권 관련 분쟁·경연 컨설팅 및 법률 자문</u></p> <p>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p> <p>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동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p> <p>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p> <p>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p> <p>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p> <p>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p> <p>6. 그 밖에 상담·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변경된 지원대상 기준을 조문에 반영(보호국)</p>
<p><신 설></p>	<p><u>제43조(산업재산권분쟁대응센터) ① 특허청장은 국내 기업 등의 국내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내의 분쟁</u></p>	<p>■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등을 위한 산업재산권분쟁</p>

	<p>의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대응센터(이하 "분쟁대응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분쟁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하 "해외진출기업"이라 한다)의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p> <p>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p> <p>3. 국내 기업 등의 상표권에 대한 해외 무단신점 및 해외 위조상품 유통 행위 모니터링</p> <p>4.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p> <p>5. 그 밖에 국내 기업 등의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p> <p>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대응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분쟁대응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의사업을 할 수 있다.</p>	<p>대응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p>
<p><신 설></p>	<p>제44조(산업재산권 보호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의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 산업재산권 보호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p>
<p>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45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홍보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 「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p><신 설></p>	<p>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6조(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홍보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 「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사범경찰관리의 직무 지원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에 필요한 업무 지원 7.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 8. 제7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9.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p>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할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6. 위원회의 업무 지원</p> <p>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p> <p>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할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9.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p> <p>10. 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할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보</p>	<p>제47조(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보호원</p>

■ 보호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근거를 명확화

<p>호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p>	<p>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p>	
<p><신 설></p> <p>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신 설></p>	<p>제3절 산업재산권의 활용 지원</p> <p>제47조(산업재산권의 활용 지원) 정부는 산업재산권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 및 거래의 활성화 방안 2. 발명 등의 평가의 신뢰성 및 활용도 제고 방안 3.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사업화 자금 지원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4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력, 평가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 등의 평가 2. 발명 등의 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④ 사업화 또는 사업화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p>■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사업화 및 거래, 발명 등의 평가 등 산업재산권 활용 지원을 위한 일반조항 신설</p>
<p>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신 설></p> <p>③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p>	<p>■ 발명의 평가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가기관의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p> <p>이 법에서는 발명 등의 평가를 하나의 단어로(용어)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따른 문구 수정 필요</p> <p>■ 향후 추가적인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평가기관을 등급을 두어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p> <p>■ 평가업무 품질제고 및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기관에 대한 종합적 평가 근거 마련</p>	

<p>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특허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대상 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p>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명 등의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특허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p>⑦ 그 밖에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항은 제51조제1항으로 이관</p>
<p><신 설></p>	<p>제49조(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① 평가기관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사업에 관한 정보(이하 "평가사업정보"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은 평가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발명 등의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평가사업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p> <p>③ 특허청은 제47조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제공 평가사업정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평가사업정보의 수집·관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특허청장이 발명 등의 평가정보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고 관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p> <p>* 기촉법 제35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참조</p>
<p><신 설></p>	<p>제50조(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p>	<p>■ 산업재산권 평가도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평가내용</p>

<p>제29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발명평가 기법의 연구 3. 발명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인으로 본다.</p> <p>제51조(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평가기관의 평가 보고서, 실적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평가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 등의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3. 발명 등의 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므로,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통일 <p>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할 시에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취지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p>
<p>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p>제52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4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53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p>■ 용어 통일</p>
<p>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p>■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확대하여 평가기관의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p>	

<p><신 설></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p> <p>4. 지정된 후 연간 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수에 미달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실시)</p> <p>① 특허정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추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4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① 특허정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추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금융회사등이 처분 가능한 하계 된 산업재산권(기업이 처분에 동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당해 담보 산업재산권은 금융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으로 금융회사에 처분권이 생기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p> <p>■ 제34조제2항에서 "금융회사등"을 약칭하여 삭제</p>
<p>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정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p> <p>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p> <p>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포럼</p>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p>	<p>제55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정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p> <p>1. 제3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p> <p>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포럼</p>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p>	<p>■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p>

<p>2. 정부의 출연금</p> <p>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p> <p><신 설></p> <p><신 설></p> <p>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p> <p>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p> <p>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정부의 출연금</p> <p>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p> <p>③ <u>매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u></p> <p>④ <u>특허청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회계연도 마다 결산에서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u></p> <p>⑤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대행하도록</u>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p> <p>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p> <p>3. 그 밖에 특허청장이 <u>필요하다고</u> 인정하는 업무</p> <p>⑥ <u>그 밖에</u>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하여 '이자수입' 및 '기존의 사업 운영 재원의 잔액을 재원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포함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근거 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금 적립 근거조항 신설
<p>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제4장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기반 조성</p> <p>제56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등) ①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개념

<p>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3.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p> <p>③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⑨ 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 특허청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⑪ 특허청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와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p> <p>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 특허청장</p>	<p>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3.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p> <p>③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④ <u>특허청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⑧ <u>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⑨ 특허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p> <p>⑩ 특허청은 <u>제9항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u></p> <p>제57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p>	<p>■ 조항 내에서 문구 정리</p>
---	---	-----------------------

<p>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5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56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56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제56조제10항에 따른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④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58조(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④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 인용조항 정리

<p>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⑥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p> <p>⑦ 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⑥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p> <p>⑦ 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공제사업의 범위를 "국제출원비용, 소송비용"에서 "국내출원, 지식재산 이전·사업화비용"까지 확대 필요</p> <p>■ 공제사업 약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p> <p>※ 의원입법 발의 (의안번호 2109723, '21.4.26.)</p>
<p>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p>	<p>제59조(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의 국내·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지식재산권 이전·사업화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p>	
<p>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0조(공제사업의 위탁 등) ① 특허청장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②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u>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u>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p>③ <u>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용도를 "초기 운영비 충당"에서 "비상상황시 손실충당" 등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도록 포괄적 용도로 변경</p>

<p><신 설></p>	<p>제61조(준비금의 적립) ① 특허청장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 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상호부조형 정책공제인 지식재산공제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준비금 적립" 근거 신설 ※ 의원입법 발의(의안번호 2109723, '21.4.26.) ■ 준비금 적립 주체에 특허청장을 추가(산자위 검토보고서 반영) ■ 지식재산공제 출연금 이익금의 적립 및 사용 근거 마련</p>
<p><신 설></p>	<p>제62조(이익금의 적립 및 사용) ① 특허청장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에서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p>	<p>■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과 등록으로 수정</p>
<p>제40조(세계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① 특허청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p>	<p>제63조(세계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① 특허청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p>	<p>■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p>

<p>3.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p> <p>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3.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p> <p>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서 공동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5조(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66조(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① 특허청장은 국민의 경제적·사회적·기술적으로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되어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이디어 거래 환경 조성 2.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운영 3. 아이디어 거래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 4.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p>■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사업의 근거 마련</p>

<p>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용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신 설></p> <p>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p>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p>	<p>5. 그 밖에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p> <p>② 특허청은 제1항에 따른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특허청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이용하는 자와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징수한 수수료는 사업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p> <p>④ 특허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⑤ 특허청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p> <p>⑥ 제4항에 따른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서는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p>	
<p>제57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신 설></p> <p>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p>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p>	<p>제67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연구원이 아닌 자는 <u>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p> <p>⑤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p>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p>	<p>■ 명칭 부정사용 금지 규정 신설</p>

<p>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p> <p>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 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p> <p>4.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 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p> <p>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p> <p>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지식재산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제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⑧ 특허정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p>	<p>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p> <p>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 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p> <p>4.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 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p> <p>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p> <p>6. <u>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u></p> <p>⑥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지식재산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⑧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제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u><삭 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개정안 제33조) 참고
<p>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p><u><신 설></u></p>	<p>제68조(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u>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u>(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u>해외산업재산권센터</u>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u>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u>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3. <u>해외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 지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년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진행해 온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 해외산업재산권 업무수행을 위해 '16년부터 운영 중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 특허청 과장급 파견직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외국투자 촉진법 참고)

<p>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p> <p>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p> <p>5.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p> <p>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p> <p>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통계·수요 조사 및 홍보</p> <p>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신 설></p>	<p>4.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p> <p>5.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p> <p>6.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p> <p>7.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p> <p>8.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통계·수요 조사 및 홍보</p> <p>9.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산업재산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해외산업재산권센터 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부서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 해외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 지원 근거 마련</p>
<p><신 설></p>	<p>④ 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⑤ 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p> <p>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p>	

<p>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 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p>	<p>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정에 따라야 한다.</p> <p>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 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69조(국제협력) 정부는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 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의 관련 연구기 관 및 교육·훈련 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관한 정보 교류 2.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간의 교류협력 3.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기반 조성 에 필요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p>제70조(국제개발협력)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산 업 발전을 위하여 산업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 여 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1조(남북 간 협력) 정부는 북한의 산업재산권의 창 출·보호·활용에 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함으 로써 남북 간의 지식재산 분야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 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국제협력 근거 마련</p>
<p><신 설></p>		<p>■ 국제개발협력 근거 마련</p>
<p><신 설></p>		<p>■ 남북 간 협력 근거 마련</p>
<p>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특허청장은 매 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p> <p>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p>	<p>제5장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p> <p>제72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시책 등) ① 특허청장 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p> <p>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p>	

<p>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p> <p>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p> <p>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p> <p>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p> <p>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p> <p>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p> <p>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p>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p> <p>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p> <p>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p> <p>② 특허청은 전문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전문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제73조(경쟁력 강화)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p>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p> <p>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p> <p>3. <u>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경력 및 사업 수주 실적 확인에 필요한 업무</u></p> <p>4. <u>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공공수요 조사에 필요한 업무</u></p> <p>5. <u>산업재산권 서비스의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u></p> <p>6.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p> <p>② 특허청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가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내용 확대
<p>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p>	<p>제74조(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p>	

<p>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전시회 등 개최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p>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전시회 등 개최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p>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5조(실태조사)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항에서 주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2조제11호 정의조항에서 약칭
<p>제40조의6(협회의 설립·운영 등)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제76조(협회의 설립·운영 등)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범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p>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협회는 범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p>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 없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p>	<p>제77조(전문회사의 지정 등)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 없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p>	

<p>로 정한다.</p>	<p>로 정한다.</p>
<p>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p>제6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등</p> <p>제78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이 장에서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임기 중 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 따라

<p>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 수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에서 이관></p> <p>⑥ 위원회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48조에서 이관></p>	<p>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 수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u>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u>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u>법률사의 자격이 있는 자</u>이어야 한다. ⑦ <u>조정위원회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u> ⑧ <u>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조정 방법 및 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부 조항을 이관 ■ 위원회의 구성 등 조항을 이관
<p>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p>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p>	<p>제7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신청 사건(이하 이 장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조정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다만 심판장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 담당 심판관이 조정위원회 위원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조정 ■ 심판-조정 연계 특례 조항(개정안 제83조) 도입에 따라 단서조항 신설

<p>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p> <p>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 of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p> <p>제41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整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법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제43조(조정 of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p> <p>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p>	<p>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p> <p>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p> <p>제80조(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삭 제></p> <p>제81조(조정 of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78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p> <p>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p>	
		<p>■ 제78조제6항으로 이관</p>

<p>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⑤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p>	<p>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u> 경우에는 30일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⑤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p>	
<p>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을 둔 영업을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출원인 2. 권리자 3. 실시권자 4. 사용권자 5. 직무발명자 6.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7.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 8.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82조(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u>제81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u>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을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인</u> 2. <u>산업재산권자</u> 3. <u>통상실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u> 4. <u>상표의 사용권자</u> 5. <u>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u> 6. <u>영업비밀을 보유한 자</u> 7. <u>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u> 8.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으로 명확한 용어로 수정
<p><신설></p>	<p>제83조(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양금하이 소송 의원안* 반영) * '21.6.28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p>② 제1항에 따라 회복된 사건의 조정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8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위원회에 회복된 날"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회복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78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p>
<p>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p>	<p>제84조(조정신청 제외대상) 분쟁 중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위한 분쟁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p>
<p>제45조(출석의 요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2회에 걸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제85조(출석의 요구)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조정 기일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p> <p>③ 조정의 양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제46조(조정신청의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7조(조정신청의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함으로써 성립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6조의2(조정신청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p>	<p>제88조(조정신청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p>

-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조정기일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유원식 의원 안* 반영) * '20.9.15 발의, 현재 산자위 계류중

<p>나 중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는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나 중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신청이 있는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p>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p> <p>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p>	<p>제89조(시효의 중단 등)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p> <p>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p>
<p>제49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90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91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7장 보칙	
<p>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p>	<p>제92조(위임 및 위탁)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원, 제76조제1항에 따른 협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p>

<p>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4항,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신 설></p>	<p>제93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삭 제> 2. 제48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삭 제> 4.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취소 5.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사의 지정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제2호, 제5호는 타법으로 이관 ■ 청문규정에 누락되어 있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추가
<p><신 설>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 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일자: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p>	<p>제96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제10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단)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를 검토한 결과, 1~7호는 일몰을 해제하고 규제를 존속하는 것으로 결정(규제법무담당관) ■ 8호도 비규제로 판단되었으나 누락되어 삭제

<p>5.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p> <p>6.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p> <p>7. 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p> <p>8.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015년 1월 1일</p>		
제8장 벌칙		
<p>제58조(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94조(벌칙)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종업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임무를 위탁한 기관(제27조제1항에 따른 중개센터,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센터,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원 임직원)은 제132조제1항에 따른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9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개센터,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원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임무를 위탁한 기관(제27조제1항에 따른 중개센터,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원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p>	<p>제9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p>	


<p>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p> <p>3. 삭제</p> <p>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p> <p>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p> <p>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p> <p>7.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p> <p>3.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p> <p>4.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p> <p><삭 제></p> <p>5. 제67조제4항을 위반하여 <u>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u></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 개정안 제94조 별칙 대상에 포함</p> <p>■ 조항 순서에 맞춰 변경</p> <p>■ 타법(신규 제정) 이관</p>
--	---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21년 11월

발행인 | 특허청장 김용래

발행처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www.kipo.go.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5135, FAX (042)472-3460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5135 <http://www.kipo.go.kr>

ISBN : 979-11-91116-83-0 13500
DOI : 10.8080/P9791191116830